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10617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8. 9. 13.

판결 선고 2018. 10.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428,70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0,820,76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7. 4.경 피고로부터 주식매수를 권유받아 주)C(이하 'C'라고 한다)와 농업회사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였다.

C	2017. 4. 18.	13,000주	201,500,000원
2017. 4. 19.	3,200주	50,240,000원	
2017. 4. 28.	7,300주	100,000,000원	
D	2017. 4. 28.	3,600주	50,400,000원
2017. 5. 25.	12,000주	30,100,000원	
합계		C 27,100주	C 402,140,000원
	D 12,000주	D 30,100,000원	

나. 원고는 위 매수를 위하여 2017. 4. 26. E(주)로부터 150,000,000원의 대출까지 받았으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피고에게 C 주식 중 일부의 매수를 요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23. 원고와 위 대출금 액수에 상당하는 C 주식 10,714주¹⁾ (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되 2017. 12. 30.까지 위 대출금을 상환하고 그 이자를 책임지며, 이를 불이행하면 원고에게 즉시 위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하는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제1주식을 입고받았다.

라.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주식들(C 주식 16,386주, D 주식 12,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도 원고가 매입한 가격으로 매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7. 8. 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제2주식도 입고하면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2017. 8. 11.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제2주식을 입고받자 재차 원고에게 금액을 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F증권 피고 G로 F증권 전화해서 C회사 D회사 내일 입고해주시면 내일 차용증 작성하여 등기우편 발송하겠습니다.

C 총 매입금액 알려주십시오. D은 수수료 포함 3100만 원2) 이구요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하구요. 두 회사 잘되게 만들어 이익 나면 스님 H사 불사에 돕겠습니다.

바. 한편, 피고는 위 2017. 12. 30.까지 위 대출금 150,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7.

5.부터 2017. 12.까지 위 대출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3,188,708원도 원고가 납입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제1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원고는 피고가 제1약정에 따라 제1주식 매매대금 148,580,76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제1주식을 매수하되 2017. 12. 30.까지 원고의 대출금 150,000,000원을

상환하고 그 이자도 책임지며, 이를 불이행하면 원고에게 즉시 위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하는

제1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그 약정기일인 2017. 12. 30.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7. 5.부터 2017. 12.까지 발생한 이자 3,188,708원도 원고가 납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제1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2018. 2. 1.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00원을 공제한 148,188,708원(= 150,000,000원 + 3,188,708원 -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148,580,762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이고, 위 148,188,7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20. 원고의 계속된 무리한 요구로 주식을 되돌려주고 제1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단지 호의로 손실을 감수하고 떠안으려고 한 것일

뿐 위 약정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위 기초사실과 거시증거들,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7. 8. 9.

원고와 제2주식을 원고가 매입한 가격으로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을 2017. 12.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2017. 8. 11. 원고로부터

제2주식을 입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1, 2주식을 합계 432,240,000원에

매입한 사실, 피고가 제1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1주식을 원고의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매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2주식의 매매대금으로 282,240,000원(= 432,240,000원 -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8. 20.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려 했으나, 원고로부터 2017. 9. 말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 차용증을 작성해주지 않았으므로, 제2약정은 성립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제2주식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한데(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 184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7. 8. 9. 원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의 목적물을 제2주식으로, 그 매매대금을 원고의 제2주식 매입가격 상당으로 하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의 차용증 작성을 제2약정 성립의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가 제2약정에 관한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해주지 않았거나, 원고가 피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이후인 2017. 10. 17.에서야 피고가 원고에게 제2주식을 반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2약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430,428,708원(= 제1약정 148,188,708원 + 제2약정 282,24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4. 2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창모

판사강성대

판사홍연경

1) 1주당 약 14,000원(= 150,000,000 ÷ 10,714원)이고, 피고가 2017. 4. 28. 매수한 1주당 가격도 약 14,000원이다.

2) 위 '3,100만 원' 기재에 대하여 원고는 D 주식의 원고 매입금액이 3,010만 원의 오기라고 주장하고, 피고도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